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재 명 

2026년 7월 28일

국 무 총 리 한 성 숙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장 김 윤 덕

●대통령령 제36542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4,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해당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 또는 시설대여를 받은 차량(이하 “소유·임차한 차량”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2의2. 「5·18민주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해당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10.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

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9세 미만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를 두 명 이상 둔 가구(이하 “다자녀가구”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 소유·임차한 차량

나.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가 승차하여 제6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급수단 중 다자녀가구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차량

다.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1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라.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부터 5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제8조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항제2호의 차량 중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나. 제1항제2호의2의 차량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부터 14급까지의 신체장해등급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한정한다) 또는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임차한 차량으로서 해당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차량

제8조제3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가구 차량

5. 통행료의 100분의 10: 제1항제10호의 차량 중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사목3)”을 “제2호아목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모두의 성명·생년월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관계(세대주 관계로 다자녀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사항을 말한다)

제15조의3제1호사목(중전의 바목)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7호까지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최대적재량”을 “최대적재량, 임차 또는 시설대여 기간(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차량의 승차정원, 소유자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또는 상호를 말한다) 및 생년월일(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 소유한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의 이용 형태가 직접 소유에서 임차 및 대여 방식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해당 차량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2029년 8월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운행하는 다자녀가구 차량을 통행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